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황용주(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공공언어 정책과 개선 현황 |
| 2. 공공언어의 개념 | 5. 해외의 언어 관리 |
| 3. 공공언어 정책의 근거와 배경 | 6. 제언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중 공공언어 정책에 대해 쓴 논문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와 정책의 추진 배경,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개선 정책, 해외의 공공언어 정책 그리고 제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언어 개선 정책은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언어 정책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개선 정책에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공공언어지원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제도 개선, 둘째 공감대 형성, 셋째, 교육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국문 핵심어: 언어정책, 언어 관리, 공공언어, 국어책임관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의견이며, 부족한 글에 대해 세세하게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전혀 필자의 책임이다.

1. 머리말

Spolsky(2010:20)는 언어정책은 서로 관련되는 세 가지 부문, 첫째는 어떤 한 언어 공동체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행위, 둘째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나 언어관이며, 셋째는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행위나 신념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부문을 언어 관리라고 부르는데, 언어 관리는 1960년대에 시도된 전형적인 언어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¹⁾

이 글은 언어정책²⁾의 한 부분인 언어 관리에 대한 부분 중 정부기관에서 펼치는 언어 관리 정책 중에서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에 대한 개선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³⁾

이 글은 먼저 국어 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언어’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문제가 국가가 취하는 공공언어 개선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공공’이란 단어 사용에 대한 현상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정책’에는

1) Spolsky(2009:4~5)에서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 대신 ‘언어 관리’(Language mana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획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후의 열망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용되었는데, 사회와 경제의 연속적 실패는 계획이라는 용어를 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용기를 잃게 만들었”으며, “서구 사회에서 여전히 집중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건강 서비스’와 ‘교육’ 두 부문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계획’이 구시대의 유물이며 ‘계획’이 적절하게 성공하지 못한 데에 따른 용어 선택임을 말해 준다. 또한 Spolsky(2004:8)에서는 ‘언어 상황’을 조종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언어에 대해 ‘개입(intervention)’하는 것을 언어 관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폴스키(Spolsky)의 견해를 받아들여 ‘언어 계획’보다는 ‘언어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언어 계획에 대해서는 조태린2010 7을 참고.)

2) 조태린(2010 7:119)은 언어정책을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하에 특정한 언어(들)와 그 사용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는 “언어정책을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인 ‘언어 운동’과는 구별해 주는 반면에, 언어 문제에 대한 개입의 기술적, 방법론적 측면을 주로 가리키는 ‘언어 계획’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언어정책’을 ‘언어계획’과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3) Spolsky(2009)에서는 ‘언어 관리’를 가정에서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법, 공공 언어적 상황, 회사, 군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언어 관리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의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⁴⁾

2. 공공언어의 개념

공공언어는 비교적 근래에 쓰이게 된 단어로 학자들 사이에서 그 개념 정의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⁵⁾ ‘공공’과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 중에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공공요금’, ‘공공주택’, ‘공공기관’ 등의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공공’이란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최근에는 ‘공공디자인’, ‘공공의료’ 등 많은 합성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과 함께 어울리는 말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다. 공공(公共)이란 말과 성격이나 성질 등의 의미를 더해주는 한자어 접미사 ‘성(性)’과 결합한 ‘공공성’이라는 말이 있다. 조한상(2009:15)은 ‘공공성’이란 낱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세기 초반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 같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이야기된다. 최근에는 건축의 공공성, 미술의 공공성, 공개공지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극장가에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도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때 ‘공공’과 연쇄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공’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언어 정책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인

4) 여기서 제시하는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방향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아니며 연구자가 생각하는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의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5) 공공언어가 사용된 시기는 대체로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의 설치로 이 단어가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남영신2009:69). 조태린(2010L:381)은 “공공언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사용되거나 논의된 바 없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식하고 정책의 방향도 변해야 할 것이다.⁶⁾

공공언어라는 말은 남영신(2009:69) 등에서 지적인 것처럼 등장 시기를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문과 잡지 기사에서 사용된 ‘공공언어’를 찾아보면, ‘공공 언어’라는 말은 2006년에 간행된 잡지에 처음 등장한다.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가 명확하고 다듬어진 언어가 되도록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새로 다듬은 말을 제안할 것이다. 또 공공 언어(밀줄 필자)가 바른 언어가 되도록 연구, 조사함은 물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국립국어원 무엇을 하는 곳?', 주간한국 2143호, 2006.10.17. 발행)

그 이후 국립국어원은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2007년)하여 발표하는 데, “공무원의 국어사용능력 증진과 공문서 등 공공언어(밀줄 필자)의 표현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국어 정책 기관⁷⁾인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미 ‘공공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였다.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다매체시대의 국어(한글)사용 개선’, ‘다문화시대의 국어 능력 향상’, ‘공공언어 환경 개선’ 등을 대상으로 자유

6)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조태린(2010:126)은 “20세기 중반까지와 달리 20세기 후반 이후의 언어 정책은 국가나 집단의 이해보다는 개인의 권리, 편의, 행복 등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향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조남호(2010:203)는 언어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해 “그동안 말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체로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한 면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던 다른 관점이 부각되면서 그 관점에서 점차 이 문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관점이다.”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어에서 전문용어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인이 쓰는 말과 다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다.

7) 한국의 어문 정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다가 1990년 문화부 ‘어문출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 이후 국어정책과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정책업무를 진행하다가 2004년 정책기능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9년 5월 국어 정책 기능이 국어민족문화과로 다시 재이관되었다. 어문정책의 변천에 대해서는 조남호(2010:195~196) 참고.

공모를 실시하였다.⁸⁾

2008년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문해력 조사를 발표하였다. 이때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 ‘성인 국어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언어(밑줄 필자)의 품질 향상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공공언어’는 2009년에 등장한 새로운 낱말이 아니라, 문헌 기록에 2006년부터 등장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입말로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국립국어원에서 2000년부터 공공부분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등의 언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⁹⁾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은 국어 순화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¹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6년부터 드문드문 쓰이던 공공언어라는 낱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9년 5월 이후이다.

정부는 공공언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언어지원단 설치 이후 공공언어에 대한 개념정의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갔다.¹¹⁾ 지금까지 이런 학술대회 등에서 나온 공공언어의 개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뉴스시 인터넷기사(NEWSIS, 2008년 5월 20일), “교과부, 우리말과 글 연구 2억5000만원 지원”

9) 공공부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정희원(2003)을 참고할 수 있다.

10) 공공언어라는 말 대신 ‘공용용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공용 용어와 생활언어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용어의 이중구조는 공공 생활과 사적생활간에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이중성을 자아내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용용어가 일상언어에 가깝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자는 한글로 고침, 동아일보, 1978년 10월 13일)

11) 2009년 6월(한글학회)과 2010년 2월(문화체육관광부, 국회)에 각각 공공언어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필자	정의
김정수(2009:1)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
김세중(2010:83)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
이인제(2009:30)	정부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남영신(2009:69)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도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
조태린(2010:383)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민현식(2010:3)	공공의 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

〈표 1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공공언어의 정의에서 사용주체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용주체 면에서 공공기관만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 범위 면에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공공언어 주체와 범위를 논의할 때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것 이외에 방송언어, 신문언어 등도 공공언어의 범위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²⁾ 이 글은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를 공공언어의 사용주체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조태린(2010-)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¹³⁾

12)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등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방송 등이 공공성에 대한 언급이 되었으며 방송 및 언론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공공언어에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 셈이다.

13) 조태린(2010-:383)에서는 공공언어의 영역, 유형, 출현 형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공공언어 정책의 근거와 배경

본론에 앞서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 행위나 신념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⁴⁾ 이는 정책적 개입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남기심(2003)은 언어가 생성 소멸하는 생명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간의 소외나 소통의 장애를 가져올 수

〈표〉 공공언어의 영역, 유형, 출현 형식

영역	유형	출현 형식
↑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1]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2]	교과서, 수업, 강의,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지식의 대중적 전달에 사용하는 언어[유형3]	기사/보도, 논설, 칼럼, 지식/교양 등
	계약, 투자, 판매, 구매, 광고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4]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등
	학계, 산업계 등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5]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서적 등
	방송, 공연 등을 통한 대중적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6]	드라마, 코미디, 예능/오락, 영화, 연극, 음악 등
↓ 사적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가상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7]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등

14) 이와 관련하여 Spolsky(2010:21)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상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거나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일인가?”

있고, 언어 예절이나 정신의 측면에서도 언어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곧 언어 정책에서 '순화는 중요하다' 라는 언급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국가가 정책적 개입¹⁵⁾을 하는 것은 '최대한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조태린2010:219)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법¹⁶⁾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다. 한국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책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 국어기본법에는 공공언어 관련 법적 조항이 여섯 가지가

15) 허철구(2009)는 공공언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으로 나누었고 조태린(2010)은 '강력한 개입, 중도적 개입, 우회적 개입' 등 3가지로 나누었다.

16) 많은 국가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법과 제도 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어 관련 특별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조태린, 2009:246)

〈표〉 세계 각국의 언어 관련 특별법

국가	언어 관련 특별법
뉴질랜드	마오리어에 관한 법(1987, 1991)
대한민국	국어기본법(2005)
미국	영어 진흥법(안)(1996)
	이중언어 교육법(1965, 1994)
	사법 관련 통역에 관한 법(1978)
	영어 통합법(안)(2005)
벨기에	사법 관련 언어법(1969)
	교육에서의 언어 관리법(1963)
	행정 관련 언어 사용법(2002)
스위스	국민어와 언어공동체 간 소통에 관한 법(2001)
스페인	상원의회에서 공동-공용어 사용 규정(2005)
	자치지역에서 공동-공용어에 의한 법령출판관련규정(1997)
아르헨티나	언어법(안)(1991)
	카스티아어 보존에 관한 법(안)(1994)
안도라	공용어 사용에 관한 조직법(1999)
인도	공용어법(1967)
차드	아랍어 교육에 관한 법률(1962)
캐나다	공용어법(1988)
폴란드	폴란드어에 관한 법(1999)
프랑스	프랑스어 사용법(1994)

있다.(조태린, 2010ㄴ:394)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법적 근거로 공공언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¹⁷⁾

현재 추진 중인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배경 중 하나로 앞에서 언급한 ‘국어발전기본계획(2007) 외에, 2008년 국민의 문해력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완전비문해율은 1.7%이지만 기초 문해력 부진율은 5.3%로 약 7%가까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를 볼 때, 기초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국민의 기초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에 대한 국어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언어의 품질 향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였다.

17) 조태린(2010ㄴ:383)에서 제시한 [유형1], [유형2]가 여기에 속한다.

국어정책이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된 이후에 ‘한글의 보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이후 세종 사업)’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국제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언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어 정책이 그 내용에 담기게 되었다. 이 발표에서 공공언어 관련 부분에 공공언어 쉽게 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정책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공공언어를 쉽게 쓰도록 하는 정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의 보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은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 그간 국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한국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언어에 대한 개선 정책의 출발은 즉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의 설치와 세종사업의 정책 발표는 그간의 언론이나 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언어에 대한 문제¹⁸⁾ 제기여 기인한다.

4.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현황

4.1. 국어책임관¹⁹⁾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공공언어의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²⁰⁾이 더

18) 조태린(2010), 384~391)에서는 공공언어의 문제를 4가지로 제시하고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지속적인 공공언어 사용,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19)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지위와 임무 규정되어 있다. 국어책임관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직하고 주요 임무는 정확한 문장 사용, 국어사용 환경개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이다. 44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와 92개 소속기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2009년 12월 기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도 국어책임관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2010년 알기 쉬운 글쓰기 법’이 발표 후 9개월 이내에 1명 혹은 복수의 고위 관리를 지명, 알기 쉬운 글쓰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맡기도 하는 동시에, 이런 쉬운 글쓰기 노력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을 담당할 1명 이상의 대외창구 직원도 두도록 했다.(연합뉴스, 10월 19일, 미관공사 쉬운 영어쓰기 감독관 신설)

20) 장후석(2010)에서는 어려운 행정용어와 정책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발생하는 것은 국민 화합 차원이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²¹⁾ 실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명으로 아래와 같은 예들이 사용되고 있다.²²⁾

OSMU 킬러콘텐츠(One Source Multi Use Killer Contents)
 인디뮤지션 발굴(Indi Musicion)
 죄악세(Sin Tax)
 마이크로 크레딧 (Micro Credit)
 마이크로 인슈어런스(Micro Insurance)
 배드 बैं크(Bad Bank)
 개인 프리워크아웃(Privite Free workout)
 패스트 트랙(Fast Track)
 잡페어(Job Fair)
 시니어 창업(Senior 창업)
 푸드 बैं크(Food Bank)
 푸드 마켓(Food Market)
 바우처 (Voucher)
 유 케어(U-Care)
 데이 케어센터(Day-Care Center)
 자활인큐베이팅 (자활 Incubating)
 뉴스타트프로젝트(New Start Project)

에 대해서 행정기관 이용자 중 66.5%가 연간 1.85회 언어 사용 불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70억 낭비가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낯선 외국어 정책명을 사용함으로써 114억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낯선 외국어 정책명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산한 실제 사례로 서울시의 여성창업학교 정책명인 '맘프러너(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가 있다. '맘프러너'를 이해하지 못해 창업 의사가 있는 4,500여 명을 포함한 6만 명이 교육 기회 상실하고 창업 기회를 상실한 4,500여 명의 예상 경제 효과는 창업 후 1년 추정 매출액 2,3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046억원, 생산유발효과 4,33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21) 어려운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국의 마허 여사가 처음 시작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은 어려운 공문서로 인해 독거 노인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 시작한 운동으로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공문서에 쉬운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이나 지시 등을 내린 바 있다.
- 22) 여기에 제시한 자료는 2009년 8월 13일에 열렸던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 자료집에 나온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정책명 중에 일부는 쉬운 말로 바뀐 것이 있는데, '마이크로 크레딧'이 '미소금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잡 셰어링, 워크 셰어링(Job Sharing, Work Sharing)

WEE 프로젝트 WEE Project

탄소 캐쉬백(탄소 Cashbag)

라이선싱 페어(Licensing Fair)

위에 사용된 예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 2009년 8월 개최하고 각 부처별로 어려운 행정용어, 외래어, 전문용어 사용으로 국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정책명을 우선적으로 발굴·정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정책 명칭을 중심으로 발굴하도록 하였다. 이 회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약 150여 개의 용어를 검토하였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언어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상징 구호 'hi seoul'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영어로 된 상징 도안이나 상징 구호를 사용하게 되었다.²³⁾ 영어로 된 상징 도안이나 상징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정작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내국인들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²⁴⁾

상징물이나 상징 구호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공공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부정확한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국어정책의 업무 이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2009년 12월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 행정 용어에 대해 쉬운 우리말 쓰기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08년도 국어책임관 우수 실적 기관으로 경상남도가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23)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Dynamic BUSAN(부산), New Start New Daegu, Colorful Daegu(대구), Fly Incheon(인천), Your Partner Gwangju(광주), It's Daejeon(대전), Ulsan for you(울산), Global Inspiration(경기), Heart of Korea(충남), Pride KyeongBuk(경북), feel GyeongNam(경남)

24) 2009년 10월 9일 방송된 '한글날 특집 문화방송(MBC) 다큐멘터리 '말의 힘'에 관련 인터뷰 내용을 참고.

2010년도에는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언어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를 2010년 5월 안동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연계하여 공공언어를 개선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이 연찬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전문용어표준화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09년 국어책임관 실적 우수 기관으로 충청북도가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어책임관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관·학·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어문화학교’ 특성화 사업(대전광역시)
- 2010년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전라남도)
- 대구시 언어 경관의 실태와 개선 방안(대구광역시)
- 공문서 바로 쓰기(울산광역시)
-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충청북도)
-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실태(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은 전문용어표준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용어표준화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그 내용이 있으며 그간 학술적인 분야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던 전문용어에 대한 정비를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이후 그간 실질적으로 전문용어표준화에 대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현재 국어기본법의 국어책임관 제도는 2005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의 운영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어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제도가 강제 조항이 아니며,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 자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어책임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2. 공공언어지원단 활동²⁵⁾

공공언어지원단은 공공언어 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언어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공문서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한 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2009)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단체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행정용어 순화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 행정 용어 개선을 지원하고 전동차 안내 문안 감수, 문화재 안내 문안 감수, 행정용어 사전 표현·표기 감수 등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대표 전화: 1599-9979)’을 설치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 전용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언어지원을 상시화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정책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 서식·문서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09),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조사(2010),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2010) 등을 진행하였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 언어도 공공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체 언어가 현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 언론사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정확한 언어 사용의 지침을 제공하여 매체 언어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개선 지침’을 개발하였고 2010년에는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사례를 매월 조사하여 개선안을 제작자에게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올바른 신문 언어 사용을 위한 지침’서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공공언어의 한 부분인 교육언어가 있는데, 교육언어개선 지원은 교과서 언

25) 이 부분은 국립국어원 20년사(2010:120~123)에 기대어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어를 감수하는 것으로 국어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교과서의 표기·표현 감수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교과서 언어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바탕을 조성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어문 규범을 감수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과서에 대해 어문 규범 감수를 실시했으며, 검인정 교과서 1400여 종에 대한 표기·표현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4.3.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국민의 국어능력향상과 국어 상담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현재 17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평가, 대국민 국어 규범 및 올바른 문장 쓰기의 상담, 학생 및 일반 시민, 공공 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 어문규범·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 공공 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에 대한 검토, 법령문·안전설 명문· 제품 설명서·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의 문안 감수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 및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확산하도록 하고 있다.

4.4. 민간 활동 지원

한국의 정부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 민간 활동을 지원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 한글학회를 지원하여 한글사랑지원단을 구성하였다. 한글사랑지원단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50여 명의 관련 전공 청년들을 뽑아 교육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약 500여 곳을 조사하여 개선안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몇몇 기관에서는 한글사랑지원단의 조치 결과를 일부 수용하거나 전부 받아들여 개선한 곳도 있다.

2010년에는 민간에서 공공부분에서 우리말 가꿈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말 가꿈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의 언어 환경 개선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발하여 활동을 하게 하였다. 우리말 가꿈이는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아나운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말 가꿈이 활동을 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길거리 홍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용어를 바꾸도록 권고하고,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하였다.

이러한 민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이 언어생활에 차별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5. 해외의 언어 관리

이 장에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와 같이 언어 관련 법을 지닌 나라 중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공공적인 영역에서 언어 사용 부분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²⁶⁾

5.1. 프랑스

프랑스 헌법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틀과 함께 소비, 직업, 교육, 학문, 방송매체, 행정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5.2. 말레이시아

26)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사례는 Jean-Francois Baldi(2010)과 Ruslibin Abd Ghani(2010)를 기대어 서술한 것으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사례는 한국의 정책 사례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언어 상담 서비스(Ruslibin Abd Ghani, 2010:85)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전화)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의 지역당국은 대부분 벽, 문, 광고판, 게시판, 전광판, 뷰잉 스크린, 동영상 스크린, 건물 입구 차양, 혹은 유사 장소 등에 공공 전시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전단지나 광고 물품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을 규정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다.

6. 제언

6.1.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등의 남발로 소통 비용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규제나 입법적 방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것보다 쉬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 예를 들면 우수 기관 표창,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연수 지원 등 장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⁷⁾

국어기본법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의 <<프랑스어 사용 법(1994)>>은 조테린(2007)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프랑스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는 정책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광석(2010)에서 언급한 ‘국어발전부담금’을 신설하여 국어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현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책, 행정 용어에서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사용하여 소통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은 현재 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남영신(2009), 이광석(2007) 등을 비롯한 다른 글에서 대부분 언급된 내용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라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어책임관은 홍보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겸직인 상태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부처의 직제 시행 규칙에 국어책임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어전문가를 채용하여 국어책임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⁸⁾

국어책임관 실적을 1년마다 보고하고 있는데, 실적 보고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6.2. 언어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언어 사용을 바꾸려는 노력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인간은 언어 활동을 함으로써 창의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그 언어 사용을 제도나 법 규칙 등으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한다면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 발달에 심각한 저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나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언어 정도 간섭해야 할 부분은 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는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쉬운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통의 측면에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문화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 사용이 필요하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당위 보다는 세계의 여러 언어와 문화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도 하나이며, 사라지는 언어 문화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문화도 잘 가꾸고 다듬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 국민이 갖도록 ‘운동’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6.3. 바르고 쉬운 우리말 사용 교육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

28) 현재 노동고용부와 같은 경우 국어전문가를 채용하여 국어책임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주고 지식을 쌓게 함으로써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바른 언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 과정이나 방과후 교육 과목에 특별 과정으로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매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찾아가는 문화학교 내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언어의 주생산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언어 개선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고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 과정과 공무원 과정을 갖춘 국어전문학교와 국어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국어문화원이 국어전문학교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립국어원에 국어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2009),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세계화 추진 방안 보고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03), 국어순화실천방안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 국어발전기본계획,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1), 국립국어원 20년사, 국립국어원.
-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2010), 서울시 공공언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
- 김세중(2010),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계획,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83~88쪽.
- 김정수(2009), 공공기관의 언어,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1~8쪽.
- 김하수(2009), 공공언어의 개념과 기능,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별첨 유인물
- 남기심(2003), 국어순화실천방안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9~11쪽.
- 남영신(2009), 공공언어 순화 추진과 제도 확립 방안,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67~83쪽.
- 남영신(2010),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체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65~81쪽
- 문화체육관광부(2010), 21세기 새로운 어문 정책의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 민현식 외(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0), 공공 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이광석(2007),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국립국어원.

- 이광석(2010),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한 국어발전기금 도입 방안, 한겨레말글 연구소제6회 토론집. 111~137쪽.
- 이인제(2009), 공공언어로서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27~65쪽.
- 이정훈(2010), 공공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1~8쪽.
- 장소원(2009),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언,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9~25쪽.
- 장후석(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서울: 국립국어원.
-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2010),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 정희원(2003), 공공 부문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65~82쪽.
- 조남호(2010), 한국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원 개원20주년 기념 언어정책 국제 학술대회 발표집, 국립국어원. 194~212쪽
- 조태린(2009),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241~265쪽.
-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제20권 제2호,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제27집, 한말연구학회, 379~405쪽.
- 허철구(2009), 공공언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85~93쪽.
- Spolsky, B.(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2009), Language Manage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2010), 세계의 언어 정책의 성과와 전망, 국립국어원 개원20주년 기념 언어정책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국립국어원. 20~51쪽.
- Ruslibin Abd Ghani(2010), 말레이시아의 국어정책 및 계획, 국립국어원 개원20주년 기념 언어정책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국립국어원. 80~93쪽.
- Jean-Francois Baldi(2010), 프랑스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원 개원20주년 기념 언어정책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국립국어원. 228~238쪽.

〈Abstract〉

Language management policy of Korea

- Focusing on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olicy -

Hwang, Yongj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ublic language in language management policy of Korea. This essay covers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public language, the improvement public language policy which is propelling from the government. It also includes the conditions abroad and sugges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Improvement public language policy does not appear in a sudden, it was caused by social change and it reflects a language policy environmen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improvement public language policy which is centered on Korean Language official, Public Language Promotion Department.

Last but not least, this article is also to introduc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bond of sympathy developed in the language community, three educational ways.

Keywords : Language policy, Language management, Public language,
Korean Language official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